

# 성암아트홀 대관규약

##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성암아트홀(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갑'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 2 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이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갑'의 대관승인을 받아 '갑'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갑'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제 3 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녹음녹화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으로 구분합니다.
2. 정기대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합니다.
3. 수시대관은 당해 년도에 잔여 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 4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공연장내의 공연과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말합니다.

## 제 5 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갑'이 정합니다.
2.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에 정기대관은 대관총액의 20%, 수시대관은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갑'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의 승인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반환)

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다. 기타 대관자가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반환)

라. 이외 타당한 이유없이 공연을 취소할 시에는 계약시 체결했던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 6 조 (공연시간)

1. 공연시간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제 7 조 (대관신청)

1.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공연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 같음 합니다.

### 제 8 조 (대관승인)

1. 갑'은 대관신청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공연대관 이외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갑'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대관승인 기준)

1. 대관승인기준은 '갑'이 전년도까지의 성암아트홀의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 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합니다.
2. 성암아트홀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가.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 합니다.
  - 나. 단체(또는 기획사)와 개인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 합니다.
  - 다. 전년도 공연시 '갑'의 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시 타 단체와 경합할 경우 위반단체보다 타 단체에 우선 대관 합니다.
  - 라.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합니다.
  - 마. 기타의 경우에는 '갑'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0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1. '갑'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갑'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갑'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제 2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마.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단, 초, 중, 고교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 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나 천재적 소질이 인정되는 자는 기획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 대관승인 후 제 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나. 이 규약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다. 이 규약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라.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마. 이 규약을 위반한 때

####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갑'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릅니다.

####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일의 해당년도 안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제 14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갑'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대관자는 '갑'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대관자는 부속시설(대기실 집기, 비품) 파손시 '갑'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6. '갑'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7. 대관자는 '갑'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갑'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갑'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제 15 조 (입장권의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합니다. 입장권 발행전에 대관자는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아트홀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자가 인쇄한 모든 입장권은 아트홀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입장권 발행 수량,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합니다.

가. 어린이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취학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 공연장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 휴대하신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연장내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로 객석수의 초과인원 입장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5.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갑'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방송 및 판촉 등)

1.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갑'에 보관시켜야 합니다.
2. 공연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제 17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갑'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 제 18 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합니다.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합니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갑'의 하우스매니저가 집니다.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갑'의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갑'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5부와 포스터 2장을 '갑'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갑'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제 20 조 (항변권)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 21 조 (규약변경 승인 등)

1.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갑'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이의를 '갑'에 서면접수하며,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 22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 제 23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24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제 25 조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05년도 3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건부터 적용합니다.

**성암아트홀**